

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	
번호	

발의연월일 : 2012. 12. 4.

발의자 : 이정율 의원 외 2인

1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,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아동” 및 “지역아동센터”등 용어를 규정함(안 제2조)
 -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.
 - “지역아동센터”란 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을 말함.
- 센터의 설치(안 제4조)
 - 센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.
- 사업 및 사업비 지원(안 제6조 및 제7조)
 - 주요사업
 -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·정서지원 활동
 -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활동

- 아동복지증진과 보호를 위한 제반활동 등
- 사업비 지원
 - 센터운영비, 종사자 인건비, 아동 급식비, 프로그램 개발비 등
-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(안 제9조~제14조))
 - 구성 : 10명 이내(위원장 1, 부위원장 1)
 - 임기 :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음
 - 기능 : 센터사업의 지원 및 방향과 정책, 발전방안 협의 등

3. 참고사항

-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관련법규 : 붙임참조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: 2012. 11. 13 ~ 12. 3(20일간)
 - 제출된 의견 없음
- 집행기관 의견수렴 : 제출된 의견없음

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,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지역아동센터”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란 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4. “종사자”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및 가족의 지원, 교육, 양육, 상담, 관리,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평창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는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.

제4조(센터의 설치) 센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이용의 대상)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.

1.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

2. 빈곤·학대·방임 가정의 아동
3. 한 부모·조손·소년소녀·다문화 가정의 아동
4.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

제6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·정서지원 활동
2.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활동
3.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
4.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
5.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 훈련, 자아존중 프로그램
6.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
7.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
8.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
9.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타 제반활동
10.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사업비 등의 지원)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센터 운영비
2. 종사자 인건비
3.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
4. 종사자 교육비
5. 프로그램 개발비
6.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

제8조(사업비 등의 환수)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

수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 할 때
2. 사업의 정해진 목적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
3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는 경우

제9조(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및 기능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센터사업의 지원 및 방향과 정책
2. 센터운영과 관련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
3.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민·관 협력방안
4. 센터운영사업 평가
5. 그 밖에 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평창군의회 의원
2. 평창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
3. 센터의 장 또는 평창군내 센터 협의기구의 대표자
4. 아동복지관련 전문가
5. 그 밖에 아동의 복지, 교육,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.

제11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

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2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13조(회의 등)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5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, 안전 사고예방, 종사자 관리,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.

② 센터의 장은 지도·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,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현시점에서 비용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이정율 의원 외 2인
연락처	(033) 330 -2189

관 련 법 규

□ 아동복지법

○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아동복지”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·사회적·정서적 지원을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
○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- 제50조(아동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- 8. 지역아동센터 :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·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